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21호 2021. 9. 23.(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50호)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51호)
-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52호)
-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53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50호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록·지정·확인, 입찰참가등록,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을 “등록·지정·확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입찰참가 신청서,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등”을 “등”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예천군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실과소	민원서류명			
새마을경제과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관련			
	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1건	1,000	
	나.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통	1,000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조건부 등록)	1건	20,000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1건	10,000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	1건	10,000	
	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조건부 등록)	1건	20,000	
	마.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등록(조건부 등록)	1건	10,000	
재무과	1.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및 확인			
	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건	800	
	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2.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300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300	
종합민원과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실과소	민 원 서 류 명			
종합민원과	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 법인	1건	30,000	
	2) 개인	1건	20,000	
	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	
	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문화관광과	1.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가. 허가 · 등록 · 신고	1건	20,000	
	나. 허가 · 등록 · 신고사항 변경	1건	5,000	
	2. 공연장 등록	1건	10,000	
	3. 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	
	4. 유원시설 허가 및 신고			
	가. 종합유원시설업			
	1)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60,000	
	2)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	
	나. 일반유원시설업			
	1)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50,000	
	2)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	
	다. 유원시설업(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 제외)			
	1) 신고	1건	30,000	
	2)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라.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5. 영화업			
	가. 신고	1건	20,000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실과소	민 원 서 류 명			
문화관광과	나. 변경신고	1건	10,000	
	다.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6. 영화상영관			
	가. 등록	1건	20,000	
	나. 변경등록	1건	10,000	
	7.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가. 신고	1건	20,000	
	나. 변경신고	1건	10,000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가. 등록	1건	20,000	
	나. 변경등록	1건	5,000	
	9.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가. 신고	1건	20,000	
	나. 변경신고	1건	10,000	
	10. 노래연습장업			
	가. 등록	1건	20,000	
	나. 변경등록	1건	5,000	
	1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환경관리과	1. 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농정과	1.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공부의 등·초본 교부			
	1) 대장문서	1통	300	
	2) 토지도면	1통	300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실과소	민 원 서 류 명			
농정과	3) 건물도면	1통	300	
	나. 공부 및 공부부분 열람			
	1) 기본료	기간당	100	
	2) 초과료	10분당	100	
	다.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100	
	2.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3. 농약판매업 등록	1건	10,000	
	4.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축산과	1.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신고·허가			
	가.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1) 정치망어업	1건	9,000	
	2) 공동어업	1건	7,500	
	나.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다.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5,000	
	라. 내수면어업연장허가신청 (정치망어업·공동어업)	1건	5,000	
	2. 양식업 면허·허가 신청			
	가. 양식업 면허신청			
	1) 양식업 면허	1건	5,000	
	2) 내수면 양식업 면허	1건	9,000	
	3)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1건	3,000	
	4)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1건	1,000	
	나. 육상해수양식업 및 내수양식업 허가 신청			
	1) 육상해수양식업 및 내수양식업허가	1건	4,000	
	2) 양식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건	1,500	
	3) 허가양식업 폐업신고	1건	800	

축산과	4) 허가양식업 휴업 및 재개 신고	1건	1,000	
	3. 낚시터업 허가 및 등록			
	가. 낚시터업 허가(변경) 신청	1건	5,000	
	나. 낚시터업 등록(변경) 신청	1건	5,000	
	다. 낚시터업 승계사실 신고	1건	5,000	
	4. 관상어양식업 신고	1건	1,000	
건설교통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1. 건설 및 하천 허가 관련			
	가.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	1건	1,000	
	나.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마. 유수의 사용 하천부속물의 점용 및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1건	점용료의 1/1,000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1필지	5,000	
	나.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	
	다. 유수의 사용 하천부속물의 점용 및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1건	점용료의 1/1,000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1필지	5,000	
	나.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	칼라 1,500
	라.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300	
	마.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300	
	바.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300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실과소	민 원 서 류 명			
건설교통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사. 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300	
	아.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300	
	자.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	1건	1,000	
	차.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	
	카.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	
	타. 체비지 확인서 (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	
	파.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하.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가.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신고	1건	1,500	
	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신고	1건	1,500	
	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	
	마.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	
	바.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	
보건소	1.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1건	40,000	
	2.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1건	20,000	
	3. 치과기공소 · 안경업소			
	가.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나. 양도 · 양수신고	1건	10,000	
	4. 부속 의료기관(의료법 제35조제1항)			
	가. 개설신고	1건	40,000	
	나. 개설 변경신고	1건	20,000	
체육사업소	1.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			
	가. 신고	1건	30,000	
	나. 변경신고	1건	10,000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수료 징수 항목 중 입찰참가 등록,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삭제에 따른 조문 내용 정비(제1조 및 제5조제1항)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 요율표 정비(별표 1)

- 회계에 관한 증명 관련 : 삭제 1건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관련 : 삭제 2건
- 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관련 : 삭제 1건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신고·허가 관련 : 변경 2건
- 양식업 면허·허가 신청 관련 : 신설 8건
- 낚시터업 허가·등록 관련 : 신설 3건
- 관상어양식업 신고 관련 : 신설 1건
- 부서 명칭 관련 : 변경 3건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51호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 시설 증축·개축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

2. 사업장 상표 개발 및 포장재 제작에 필요한 비용
3. 사업장 장비 및 비품 교체에 필요한 비용
4.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재해·재난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카드수수료 및 긴급생계비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를 제4조로 하고, 제6조, 제12조의2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2. 지원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2(으뜸가게 발굴·육성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천군 으뜸가게를 발굴·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천군 으뜸가게 발굴·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원 구성 시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연령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천군 으뜸가게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평가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평가단의 구성·운영, 평가단이 수행할 평가방법 및 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의2(지원 제한) ①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장소 또는 동일 업체가

1회 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타분야에서 총액 2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2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은 제1항의 지원 제한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군수는 다음”으로, “지원 중지 및”을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원신청한”을 “지원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폐업”을 “사업장을 폐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업종의 경우”를 “경우”로 한다.

3. 지원받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상위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예천군 으뜸가게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정의 정비(제1조, 제2조 및 제21조)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나. 지원내용 및 적용범위 명확히 규정(제3조 및 제5조)

○ 지원내용 : 사업장 시설 증축·개축·수선, 상표 개발, 포장재 제작, 장비·비품 교체 비용 등

○ 적용범위 : 예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 규정(제6조)

○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 조사 실시

라. 예천군 으뜸가게 발굴·육성에 대한 근거 신설(제12조의2)

○ 예천군 으뜸가게 발굴·육성 추진을 위한 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현지답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및 개선사항 발굴

○ 평가단의 평가결과 반영하여 예천군 으뜸가게 선정

마. 지원 중지 및 환수 내용 일부 수정(제17조의2 및 제18조)

○ 재해·재난에 대한 피해 및 으뜸가게 선정에 따른 지원은 지원 제한 산정 시 제외

바.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근거 신설(제20조의2)

○ 소상공인 관련 단체 활동 및 사업 지원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52호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제외업종(제7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홍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규정」을 고려하여 특례보증 지원 제외업종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외업종 일부 개정(별표)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류 도·소매업, 여관업, 지주회사, 부동산 컨설팅서비스 업종을 삭제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53호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예천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3조 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예천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예천군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예천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예천군 주소정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예천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공제 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수건, 물티슈, 칫솔세트, 손톱깎이세트, 볼펜, 보조배터리, 우산, USB, 물병, 머그컵, 티슈, 수첩, 부채, 기타 물품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천군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 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의 기관 외에도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천군도로명주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제16조에 따라 둔 예천군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
정에 따라 둔 예천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개정 : 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목적, 주소정보 사용 확대에 대한 사항(제1조 ~ 제2조)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에 대한 사항(제3조)

라.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비용에 대한 사항(제4조)

마.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제5조)

바. 주소정보위원회에 대한 사항(제6조 ~ 제12조)

사. 손해배상 공제 가입에 대한 사항(제13조)

아.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추진에 대한 사항(제14조)

자. 주소정보 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제15조)